

1. 개정이유

예대출 산출시 수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화예대출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 별첨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취급된 서민형”을 “취급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금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

가. ~ 다. (생략)

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4.·5. (생략)

② ~ 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취급된 -----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